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숭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62

발의연월일: 2022. 1. 25.

발 의 자:김승남·주철현·민병덕

최종윤ㆍ이용빈ㆍ김영배

맹성규 · 소병철 · 이인영

김성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농어가의 피해의 종류 및 지원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.

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만,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대상으로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 한정하고 있음.

실제로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일대에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하여 정부의 금융 관련 지원은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 등에 그쳐 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필요했던 양식시설현대화 자금, 사료구매자금 등의 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 원이 어려운 실정임. 이에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의 연기 및 그이자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9호, 제4조제3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9호다목 중 "영농자금(營農資金)"을 "영농자금(營農資金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자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"영어자금(營漁資金)"을 "영어자금(營漁資金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정책자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(생 략)	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	②
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	
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	
음 각 호에 따른다.	
1. ~ 8의2. (생 략)	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
9.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	9
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	
원하는 경우	
가.•나. (생 략)	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영농자금(營農資金)</u> 의 상	다. 영농자금(營農資金) 등
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
감면	<u>정책자금</u>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	③
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	
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	
음 각 호에 따른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	3
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	

원하는 경우

가. • 나. (생략)

다. <u>영어자금(營漁資金)</u>의 상 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

라. (생 략)

4. (생략)

④ ~ ⑧ (생 략)

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<u>영어자금(營漁資金) 등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</u> 업정책자금-----

라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